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 강유정·김영배·김정호

박수현 · 김한규 · 송재봉

김윤덕・박 정・정을호

한준호 · 강경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 영화는 국제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작품성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세계 영화시장에서의 문화적 위상이 한층 격상되고 있음.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자리함.

그러나 최근 정부가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및 운용에 대한 위기감이 심화됨. 이에 법률에 부과금 징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부터 확인받아야 함.

그런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영화발 전기금이 문화의 생명력인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영화생태계의 선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상영등급을 분 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 원회가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확인한 후에 해당 영화업자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0조 신설 등).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를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 시 상영하는 영화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동일성 여부 등의 확인) ①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여 상영하거나 다시 상영하려는 경 우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다.
 - ② 영화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상영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와 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영화업자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절차,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4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30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영하는 영화 제9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30조에 따른 동일성 여부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제9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30조를 위반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	
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	
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	
의 100분의 <u>5 이하의 범위에서</u>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과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u>징수할 수 있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	
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	
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	
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2. (생 략) <u><신 설></u>

3. (생 략) ② ~ ⑩ (생 략) <신 설> _____

- 1. 2. (현행과 같음)
- 2의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 3. (현행과 같음)
- ② ~ ⑩ (현행과 같음)

①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여 상영하거나 다시

제30조(동일성 여부 등의 확인)

상영하려는 경우 동일한 내용 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

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영화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상영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 부와 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 리를 가진 자인지의 여부를 확 인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영화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 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 야 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5. (생 략) 제90조(수수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 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업자에게 왁인증명서들 발급하
<u> 여야 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확인절차, 확인증명서의 발
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
<u>로 정한다.</u>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
1. (현행과 같음)
, = 0 , = = /
1의2. 제30조를 위반하여 확인
1의2. 제30조를 위반하여 확인
1의2. 제30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영하는
1의2. 제30조를 위반하여 확인 을 받지 아니하고 상영하는 영화
1의2. 제30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영하는영화2. ~ 5. (현행과 같음)
1의2. 제30조를 위반하여 확인 을 받지 아니하고 상영하는 영화 2. ~ 5. (현행과 같음) 제90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
1의2. 제30조를 위반하여 확인 을 받지 아니하고 상영하는 영화 2. ~ 5. (현행과 같음) 제90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1의2. 제30조를 위반하여 확인 을 받지 아니하고 상영하는 영화 2. ~ 5. (현행과 같음) 제90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1의2. 제30조를 위반하여 확인 을 받지 아니하고 상영하는 영화 2. ~ 5. (현행과 같음) 제90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1의2. 제30조를 위반하여 확인 을 받지 아니하고 상영하는 영화 2. ~ 5. (현행과 같음) 제90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1의2. 제30조를 위반하여 확인 을 받지 아니하고 상영하는 영화 2. ~ 5. (현행과 같음) 제90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생 략)

<신 설>

- 2. ~ 7. (생략)
- ③ ④ (생 략)
-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u><신 설></u>

2. ~ 12. (생략)

2. ~ 12. (현행과 같음)